

##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8
----------	-----

발의년월일 : 2001. 7. 2

발 의 자 : 노상익의원외 17명

### 1. 제안이유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에 의해 제정된 현행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 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함에 있음.

### 2. 주요골자

- 제1조(목적)의 관계법령의 시행령을 법률과 시행령으로 표기함.
- 제2조(위원회 구성)의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시민단체를 포함하고
  - 지역사회에 능통자로 목포시의회 의원 신설함.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심의사항)을 법의 개정 내용에 맞도록 내용을 개정
  - 1)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 2)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5. 관계법령 : 별첨

- 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 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
- ③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
- ④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 6. 예산사항 : 해당없음.

7. 관련부서의견 : 해당없음.

8. 사전협의사항 : 해당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목포시 조례 제 호

###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1. 목포시 과장급이상 공무원중 토지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토지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3. 변호사

4.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지역사정에 정통한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6. 목포시의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심의)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년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삭 제)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토지관련 담당공무원 중에서 1인을 위원장이 정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서 보충발언을 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일비와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자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위원회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p> <p>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 중 5급이상의 공무원 5인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토지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u></li> <li>2. <u>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u></li> <li>3. <u>자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li> <li>4. <u>지역사정에 정통한 자</u></li> </ol> <p>⑤ (생략)</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자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위원회)</b>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p> <p>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목포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중 토지관련업무 담당 공무원</u></li> <li>2. <u>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토지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u></li> <li>3. <u>변호사</u></li> <li>4. <u>자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li> <li>5. <u>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u></li> <li>6. <u>목포시의원</u></li> </ol> <p>⑤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b>제3조(소위원회 구성)</b> ①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의 과정과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p>	<p><b>제3조(소위원회)</b>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b>제4조(심의사항)</b>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li> <li>2.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li> <li>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li> </ol>	<p><b>제4조(심의)</b>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li> <li>2.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li> <li>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li> </ol>
<p><b>제5조(회의소집)</b> 위원회의 회의는 년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p>	<p><b>제5조(회의)</b> ① 위원회는 년1회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b>제6조(의사)</b>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b>제6조 (삭 제)</b></p>
<p><b>제7조(간사 등)</b> 1. 위원회에 간사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2. 간사는 토지행정담당주사가 된다. 3.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 담당자가 된다. 4.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p>	<p><b>제7조(간사)</b> ① 위원회의 간사는 토지관련 담당공무원 중에서 1인을 위원장이 정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서 보충발언을 할 수 있다.</p>
<p><b>제8조(수당)</b> 위원회의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b>제8조(일비와 여비)</b>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